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99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이언주·이재강·민병덕

한준호・박 정・이연희

장종태・김병주・김 윤

이재관 · 정진욱 의원

(119]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주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상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처럼 쇠퇴해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책이 자율상권구역에 치중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예외적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 신설).
- 나. 정부가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 29조의3 신설).
-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판로 촉진, 상거래현대화 촉진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
- 라.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0조의2 신설).
- 마.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율상권구역"을 "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있다.
- 제29조의3(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화재공제의 운영 및 공제료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통 시장"은 "활성화구역"으로 본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을"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5.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 6. 전자상거래,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주문,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 촉진
- 7. 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및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간 산학협력사업 지원
-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1. 상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을 위한 장소
 -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3. 활성화구역 내 청년상인 및 예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장소
 -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 5.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 6. 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의 설치

장소

- 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의3(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활성화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업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 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례) ① 활성화구역-----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 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하여 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3(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화재로 인한 활성화 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 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 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 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
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구역 <u>활성화를</u>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신 설>

<신 설>

<신 설>

2	화>	재공>	제의	운영	및	공자]료
지-	원 .	등에	관	하여는	_ [_ 전통	틀시
<u>장</u>	및	상주	보가	육성	을 9	위한	특
<u>별</u>	법_	제:	24조	의2를	준	용한	<u>다.</u>
0]	경-	우 "	전통	시장"	<u> </u>	"활성	<u> </u>
구(역".	으로	본다	- <u>.</u>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bigcirc	 	 	 	 		 -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 4. ---- 활성화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을

 - 5.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 6. 전자상거래,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 래현대화 촉진
 - 7. 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및 지역상 생협의체·자율상권조합 간 산학협력사업 지원

② · ③ (생 략) <신 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 1. 상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 화·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 사 등을 위한 장소
 -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 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3. 활성화구역 내 청년상인 및 예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

 시판매를 위한 장소
 - 5.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 6. 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 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 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의 설치 장소
 - 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신 설>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 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3(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

 표시・설치 등 활성화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